

목 차

◆ 공 고

제2011-1747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-1747호

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

지방자치법 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31일
서울특별시장

구분	연번	부의 안건명	주관부서
동의안 (2)	1	201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	예산담당관
	2	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(안)	공원조성과